

● 제316회 ●
서울특별시의회(임시회)
제1차 보건복지위원회

서울특별시 꿈자람학대피해아동쉼터
신규위탁 동의안
검 토 보 고 서

2023. 2. 24.

보 건 복 지 위 원 회
수 석 전 문 위 원

【서울특별시장 제출】

의안번호 541

I. 동의안 개요

1. 제안자 및 제안경위

가. 제안자 : 서울특별시장

나. 제안일 : 2023. 2. 6.

다. 회부일 : 2023. 2. 9.

2. 제안이유

가. 학대피해아동쉼터 지정위탁 운영 종료(2023.3.1.)에 따라 민간위탁으로 전환이 필요함.

나. 학대와 가정에서의 분리 등으로 신체적,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아동을 돌보는 시설로 전문지식 및 현장 경험을 보유한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에게 운영을 위탁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위탁개요

- 시설명: 꿈자람학대피해아동쉼터
- 소재지: 서울시 동대문구(비공개시설)
- 시설규모: 연면적 114,52㎡(대지 17,593.5㎡분의 45.32, 공동주택 2층)

나. 위탁내용

- 위탁사무: 「꿈자람 학대피해아동 쉼터」 운영 및 관리
 - 학대피해로 의뢰된 아동보호 및 치유 기능
 - 학대피해아동 교육·특기적성·문화체험 등 생활 지원
 -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상담, 건강검진, 심리검사 및 가정환경 조사
 - 사례관리 체계 구축 및 지역사회 자원연계 등
- 위탁기간: 2023. 6. 1. ~ 2028. 5. 31.(5년)
 - ※ 현운영법인: (사)모래놀이상담협회(위탁기간: '18.4.10.~'23.3.1.)
- 수탁자 선정방식 : 공개모집
 - '23년 제1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 결과: 적정('23.1.17.)
- '23년 소요예산(안): 345,498천원

다.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필요성

- 추진근거
 - 아동복지법 제53조의2(학대피해아동쉼터의 지정)
 -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1항 및 제5항(사회복지시설 및 위탁운영)
 -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(관리 운영의 위탁)
 -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(민간위탁사무 내용)
 - 서울특별시 아동학대 예방·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제11조3항(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·운영 등)
- 민간위탁의 필요성
 - 서울시 소유의 행정재산을 활용하여 설치된 시설로, 현재 운영 법인의 수탁종료 의사표시로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및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맞게 신규위탁 절차를 통해 전문성과 사업성을 두루 갖춘 적격자를 선정하여 학대피해 아동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[아동복지법 제53조의2(학대피해아동쉼터의 지정)]

- ②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52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 중에서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, 치료, 양육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지정할 수 있다.

[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1항, 5항(사회복지시설 및 위탁운영)]

-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(이하 “시설”이라 한다)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- 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.

[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제1항(관리·운영위탁)]

- ① 시장은 사회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사회복지시설의 관리·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.

[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(민간위탁 사무내용)]

- 1. 노인·장애인·여성·청소년·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

[서울특별시 아동학대 예방·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제11조(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·운영 등)]

- ③ 시장은 필요시 제1항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운영을 비영리법인·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.

나. 예산조치 : 예산변경 필요

- 2023년 예산은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로 편성되어 민간위탁금으로 예산변경이 필요함.

※ 기 편성된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345,498천원 중 민간위탁 선정 후 인수·인계시까지 지출예산을 제외한 201,540천원을 민간위탁금으로 변경 필요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2023년 제1차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완료(적정)

II. 검토의견 (수석전문위원 박지향)

1 동의안의 개요

- 본 동의안은 ‘꿈자람학대피해아동쉼터’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사무를 민간 위탁으로 추진하고자,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(이하 “「민간위탁조례」”라 한다) 제4조의3제1항¹⁾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것임.
- 시장이 민간위탁하려는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에 관한 구체적 사무 내용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와 일상생활을 지원하고 심리검사나 검진 등을 통한 치료와 학업지도, 체육활동 등 교육 및 정서 지원임.

2 주요사항 검토

가. 동의안의 추진배경

- 꿈자람학대피해아동쉼터는 자치구에서 쉼터 추가설치 국비 보조 대상지역으로 선정되어 서울시 소유의 행정재산을 활용하여 2018. 3. 2.부터 5년간 위탁운영하였으나 현재 운영법인의 수탁종료 의사표시로 신규 수탁법인 공모를 추진하여야 하는바,
- 서울특별시 전체의 학대피해아동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

1)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3(의회동의 및 보고) ①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와 위탁사무의 중요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, 제2조제4호에 따른 재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(이하 "의회"라 한다)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 <개정 2021.3.25, 2021.12.30>

하기 위한 신규위탁 절차를 수행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본 동의안이 제출되었음.

- 학대피해아동쉼터는 지속적인 학대로 인해 문제행동 및 우울증·자살충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 피해아동에게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아동학대 후유증에 신속하게 개입함으로써 피해아동의 건강한 자아회복에 기여하기 위하여 아동의 보호 및 양육뿐 아니라 치료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.
- 서울시 아동학대 신고 및 학대판단 건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학대아동피해쉼터 추가확충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.

<연도별 아동학대 신고 및 학대판단 건수>

(단위: 건)

| 구 분 | 2017년 | 2018년 | 2019년 | 2020년 | 2021년 |
|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
| 신고접수 | 3,812 | 3,660 | 3,571 | 4,369 | 6,137 |
| 학대사례 | 2,307 | 2,227 | 2,200 | 2,670 | 3,421 |

- 현재 서울지역에는 8곳의 학대피해아동쉼터가 운영 중에 있으며 '23년도에 추가로 5곳의 쉼터가 설치 예정임.(붙임1)

나. 해당 사무의 민간위탁 타당성

- 민간위탁의 대상으로 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것은, 행정권의 포기과 공익성 실현의 왜곡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법치국가의 원리상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범위와 한계를 분명히 할 것이 요청됨.

- 「지방자치법」 2)에서는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,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34조제1항³⁾ 및 「서울특별시 아동학대 예방·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」 제11조제1항⁴⁾에 따라 시장은 「아동복지법」에 따른 사회복지 시설인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
- 「민간위탁조례」 제4조⁵⁾ 및 제6조⁶⁾ 등에서는 ‘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’로서 ‘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는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’고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,
- 본 동의안에서 위탁하려는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에 관한 사무는 피해아동에게 신체적 안전 및 신속한 개입 서비스를

2) 「지방자치법」 제117조(사무의 위임 등) ①~② (생략)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④ (생략)

3)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34조(사회복지시설의 설치)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 시설(이하 “시설”이라 한다)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 <개정 2011. 8. 4.>

4) 「서울특별시 아동학대 예방·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」 제11조(학대피해 아동쉼터 설치·운영 등) ① 시장은 피해아동의 신체적 안전 및 정서적 안정과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5)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 <개정 2009. 7. 30., 2012. 12. 31., 2014. 5. 14.>

1.~2. (생략)

3.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

4. (생략)

② 삭제 <2014. 5. 14.>

6)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6조(민간위탁 사무내용)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09. 3. 18., 2009. 7. 30., 2014. 5. 14., 2019. 9. 26.>

1. 노인·장애인·여성·청소년·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

8.~9. (생략)

제공하는 등 전문성을 요구하는 민간위탁 사무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됨.

- 또한 「서울특별시 아동학대 예방·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」 제11조제2항7)에서 시장은 필요시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운영을 비영리법인·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,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운영에 관한 사무는 민간위탁 사무로서의 그 법적 요건을 갖춘 것으로 사료됨.

3 종합의견

- 본 동의안은 학대피해아동쉼터 지정위탁 운영 종료('23.3.1) 예정에 따라 신규위탁 추진을 위해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되었음.
- 금번 동의안에서 시장이 위탁하려는 사무는 피해아동에게 신체적 안전 및 신속한 개입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아동의 보호 및 양육뿐만 아니라 치료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, 그 사무의 특성상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다년간의

7) 「서울특별시 아동학대 예방·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」 제11조(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·운영 등) ① 시장은 피해아동의 신체적 안전 및 정서적 안정과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 <개정 2019. 12. 31.>

1. 피해아동 보호 및 숙식 제공
2. 피해아동 생활지원
3. 상담 및 치료
4. 교육 및 정서지원
5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③ 시장은 필요시 제1항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운영을 비영리법인·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.

현장 경험에 기반한 서비스 제공이 요구된다는 점에서
이의 노하우를 지닌 민간단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하게
하는 것이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을 것임.

- 이에 꿈자람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에 관한 사무를 민간
위탁으로 추진하려는 본 동의안은 그 타당성이 인정된다
할 것임.

| |
|-------|
| 문 의 처 |
|-------|

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김종훈 입법조사관 (02-2180-8148)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|

붙임1 서울 지역 학대피해아동쉼터현황

□시설현황 : 13개소(시립 5, 구립 8)

| 연번 | 기관명 | 설립주체 | 소재지 | 운영단체 | 종사자 | 정원(성별) | 규모(m ²) | 설치일 |
|----|-----|------|------|-------------|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1 | 이룸 | 시립 | 중랑구 | (사)아동그룹홈협의회 | 6명 | 7명(여아) | 147.97 | '18.02.28. |
| 2 | 다운 | 시립 | 관악구 | (사)아동그룹홈협의회 | 6명 | 7명(남아) | 131.43 | '17.12.14. |
| 3 | 꿈마루 | 시립 | 강서구 | (사)꿈이루는사람들 | 6명 | 7명(남아) | 136.89 | '21.03.02 |
| 4 | 꿈자람 | 시립 | 동대문구 | (사)모래놀이상담협회 | 6명 | 7명(여아) | 114.52 | '18.04.14. →'23.6.1(민간위탁) |
| 5 | OU | 구립 | 노원구 | (사)모래놀이상담협회 | 6명 | 7명(여아) | 113.30 | '19.07.10. |
| 6 | 꿈나래 | 구립 | 서초구 | 계영복지재단 | 4명 | 7명(여아) | 108.00 | '21.10.25 |
| 7 | 꿈누리 | 구립 | 양천구 | (사)꿈을이루는사람들 | 6명 | 7명(여아) | 113.91 | '22.07.20. |
| 8 | 다예 | 구립 | 노원구 | (사)모래놀이상담협회 | 6명 | 7명(영유아) | 143.66 | '21.07.01. |
| 9 | | 시립 | 서대문구 | | | | | '23년 설치예정 |
| 10 | | 구립 | 서대문구 | | | | | '23년 설치예정 |
| 11 | | 구립 | 강서구 | | | | | '23년 설치예정 |
| 12 | | 구립 | 영등포구 | | | | | '23년 설치예정 |
| 13 | | 구립 | 강동구 | | | | | '23년 설치예정 |

- ※ 꿈자람 쉼터는 지정위탁 운영('23.3.1.) 종료로 '23년 신규 민간위탁 추진
- ※ 다예 쉼터는 성별 구분없이 운영하여 국비 미지원 (설치·운영비 전액 구비부담)
- ※ 서대문구 쉼터(가칭)외 4개소 '23년 설치 예정